

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5-380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09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, 경제투자 활성화 및 건축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「건축법 시행령」이 일부개정(2009. 7. 16 대통령령 제 21629호)됨에 따라 영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1 비고1호의 가목,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도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(안 제3조)
- 나. 공사용 현장사무소 및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(안 제21조)
- 다. 관광시설 및 골프장 등에 대하여 조경 적용 완화(안 제25조)
- 라.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정을 완화(안 제25조의2)
- 마.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, 다양한 공동주택(도시형 생활주택 등) 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(안 제32조)
- 바. 공개공지 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업판촉활동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한 사용이 가능토록 완화 (안 제33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1 비고1호의 가목,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영 제15조제5항제12호”를 “영 제15조제5항제14호”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영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3호, 제6호부터 제10호, 제12호 및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영 제27조제1항의 제5호”를 “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
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
9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
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
10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·휴양
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
1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골프장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대지와 도로의 관계)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은 축사·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동·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.

제3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(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(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5배) 이상 띄어야 한다.
-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(마주보는 두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, 주된 개구부(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)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8배(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4배)이상,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(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5배)이상 띄어야 한다.

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. 다만,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실·과		건 축 과
입 안 자	담당관·과 장 직위·성명	건축과장 여 규 만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건축담당 주 대 승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재 현 (860-2393)

【신 · 구조문대비표】

현행	개정안
제3조(적용의 완화) ①~②(생략) 〈신설〉	제3조(적용의 완화)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를 완화 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별표1 비고1호의 가목,나목 및 라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.
③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(가설건축물) ①~②(생략)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 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. 1.~ 2. (생략) 〈신설〉	제21조(가설건축물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④ 영 제18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은 영 제15조제5항제3호, 제6호부터 제10호, 제12호 및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한다.
제25조(대지안의 조경) ①(생략)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은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. 1.~ 7. (생략) 〈신설〉	제25조(대지안의 조경) ①(현행과 같음)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 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에 설치하는 관광시설

현행	개정안
〈신설〉	9.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 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
	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
〈신설〉	10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·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
〈신설〉	1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골프장
〈신설〉	제25조의2 (대지와 도로의 관계) 영 제 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은 축사·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동·식물관련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.
제32조(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①~② (생략)	제32조(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) ①~② (현행과 같음)
〈신설〉	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(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(도시형생

현행	개정안
〈신설〉 제33조(공개공지확보) ①~④ (생략) 〈신설〉	<u>활주택의 경우에는 0.5배)이상 띄어야 한다.</u>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(마주보는 두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, 주된 개구부(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)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.8배(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4배)이상,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(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.5배)이상 띄어야 한다. 제33조(공개공지확보)①~④(현행과 같음) ⑤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. 다만,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.